

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성기 의원)

의안 번호	47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년 9월 19일

발 의 자 : 김성기 의원

찬 성 자 : 남진삼, 박춘희, 이창열 의원

1. 제안이유

- 이효석문화예술촌 군민 무료 전환으로 군민 누구나 부담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,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여 군민 중심의 문화예술 정책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평창군민 대상 관람료 면제

- (현행) 관람료 50% 감면 → (개정) 관람료 면제

나. 감면 근거 확대

- 다른 지자체와의 협약이나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시 감면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역문화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불임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다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5. 8. 26. ~ 2025. 9. 3.(9일간), 의견없음

[조례안]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4 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평창군민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문화시설 관람료(제6조제1항 관련)

1. 이효석문학관

(단위: 원)

구 분	일 반	단 체	비 고
관람료	2,000	1,500	

2. 효석달빛언덕

(단위: 원)

구 분	일 반	단 체	비 고
관람료	3,000	2,000	

3. 통합권(이효석문학관, 효석달빛언덕)

(단위: 원)

구 분	일 반	단 체	비 고
관람료	4,500	3,000	

※ 단체: 20명 이상 동시입장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6조(관람료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군수는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. <u>다만,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군민은 100분의 50을 감경한다.</u></p> <p>⑤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[별표 3] 문화시설 관람료(제6조제1항 관련)</p> <p>1. 이효석문학관 (단위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<th>구 분</th><th>일 반</th><th>단 체</th><th>군 민</th><th>비 고</th></tr> <tr><td>관람료</td><td>2,000</td><td>1,500</td><td>1,000</td><td></td></tr> </table> <p>2. 효석달빛언덕 (단위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<th>구 분</th><th>일 반</th><th>단 체</th><th>군 민</th><th>비 고</th></tr> <tr><td>관람료</td><td>3,000</td><td>2,000</td><td>1,500</td><td></td></tr> </table> <p>3. 통합권(이효석문학관, 효석달빛언덕) (단위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<th>구 분</th><th>일 반</th><th>단 체</th><th>군 민</th><th>비 고</th></tr> <tr><td>관람료</td><td>4,500</td><td>3,000</td><td>2,000</td><td></td></tr> </table> <p>※ 단체: 20명 이상 동시입장</p>	구 분	일 반	단 체	군 민	비 고	관람료	2,000	1,500	1,000		구 분	일 반	단 체	군 민	비 고	관람료	3,000	2,000	1,500		구 분	일 반	단 체	군 민	비 고	관람료	4,500	3,000	2,000		<p>제6조(관람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. <단서 삭제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<u>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 <p>[별표 3] 문화시설 관람료(제6조제1항 관련)</p> <p>1. 이효석문학관 (단위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<th>구 분</th><th>일 반</th><th>단 체</th><th>비 고</th></tr> <tr><td>관람료</td><td>2,000</td><td>1,500</td><td></td></tr> </table> <p>2. 효석달빛언덕 I (단위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<th>구 분</th><th>일 반</th><th>단 체</th><th>비 고</th></tr> <tr><td>관람료</td><td>3,000</td><td>2,000</td><td></td></tr> </table> <p>3. 통합권(이효석문학관, 효석달빛언덕) (단위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<th>구 분</th><th>일 반</th><th>단 체</th><th>비 고</th></tr> <tr><td>관람료</td><td>4,500</td><td>3,000</td><td></td></tr> </table> <p>※ 단체: 20명 이상 동시입장</p>	구 분	일 반	단 체	비 고	관람료	2,000	1,500		구 분	일 반	단 체	비 고	관람료	3,000	2,000		구 분	일 반	단 체	비 고	관람료	4,500	3,000	
구 분	일 반	단 체	군 민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람료	2,000	1,500	1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일 반	단 체	군 민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람료	3,000	2,000	1,5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일 반	단 체	군 민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람료	4,500	3,000	2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일 반	단 체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람료	2,000	1,5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일 반	단 체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람료	3,000	2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일 반	단 체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람료	4,500	3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【별표 4】

관람료 면제대상(제6조제4항 관련)

1. 국민,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
2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
3. 6세 이하의 어린이와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
4. 다음 각 목의 법률조항에 따른 해당자와 그 유족
 - 가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
 - 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
 - 다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다만, 유족은 해당하지 않는다.
 - 라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
 - 마. 「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
5. 단체(20명 이상으로 한다) 관람에서 20명마다 1명의 인솔자
6.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【별표 4】

관람료 면제대상(제6조제4항 관련)

1. 국민,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
2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
3. 6세 이하의 어린이와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
4. 다음 각 목의 법률조항에 따른 해당자와 그 유족
 - 가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
 - 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
 - 다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다만, 유족은 해당하지 않는다.
 - 라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
 - 마. 「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
5. 단체(20명 이상으로 한다) 관람에서 20명마다 1명의 인솔자
6.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평장군민
7.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[관계법령]

<지방자치법>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4. (생략)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
가.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
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다. 시·도유산의 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

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
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
6. ~ 7. (생략)

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<지역문화진흥법>

제9조(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을 이용하는 연평균 입장객 중 평창군민은 약 1,000명이며, 이에 따른 연간 입장권 매출액은 약 100만 원입니다.

2. 미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

3. 미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은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장 박용호
연락처	(033) 330 - 2850